

##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

▶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 은행권 이자환급 ②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1.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 2.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기업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기업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기업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기업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표>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br>0.5%p 일괄 적용<br>(5.0~5.5%→4.5~5.0%) | 적용금리와<br>5% 간 차이<br>(5.5~6.5%→5.0%) | 모든 금리에<br>1.5%p 일괄 적용<br>(6.5~7.0%→5.0~5.5%) |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이자환급 예 ]

-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 3.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 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 구 분               | 대출 취급시점       | 금 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br>이자환급   | 불필요  |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br>개인사업자대출과<br>가계신용대출<br>(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요   |
|                   |               |                | 법인 소기업의<br>사업자 대출                         |               |      |
| 중소금융권             | '23.12.31일 이전 | 5% 이상<br>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br>이자환급 | 필요   |
|                   |               |                | 법인 소기업의<br>사업자 대출                         |               |      |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br>개인사업자대출과<br>가계신용대출<br>(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요   |
| 법인 소기업의<br>사업자 대출 |               |                |   |               |      |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4.1.3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

### <은행권 이자환급>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br>은행과   | 책임자 | 과 장 | 강영수 (02-2100-295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경호 (02-2100-2953) |
|       | 금융감독원<br>은행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정우현 (02-3145-8020) |
|       |                | 담당자 | 팀 장 | 양유형 (02-3145-8050) |
|       | 은행연합회<br>전략기획부 | 책임자 | 부 장 | 박진우 (02-3705-5247) |
|       |                | 담당자 | 팀 장 | 김수연 (02-3705-5287) |
|       | 여신금융부          | 책임자 | 부 장 | 박영상 (02-3705-5704) |
|       |                | 담당자 | 팀 장 | 배진호 (02-3705-5224) |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br>중소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02-2100-299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근 (02-2100-2993) |
|       | 중소벤처기업부<br>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강신천 (044-204-7520) |
|       |                  | 담당자 | 사무관 | 윤도현 (044-204-7524)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br>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남동우 (02-2100-2860) |
|       |                 | 담당자 | 사무관 | 허 성 (02-2100-2862) |
|       | 신용보증기금<br>신용보증부 | 책임자 | 부 장 | 정현호 (053-430-4331) |
|       |                 | 담당자 | 팀 장 | 강재영 (053-430-4358) |
|       | 은행연합회<br>여신금융부  | 책임자 | 부 장 | 박영상 (02-3705-5704) |
|       |                 | 담당자 | 팀 장 | 배진호 (02-3705-5224) |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기업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 중소기업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임
  -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임
  -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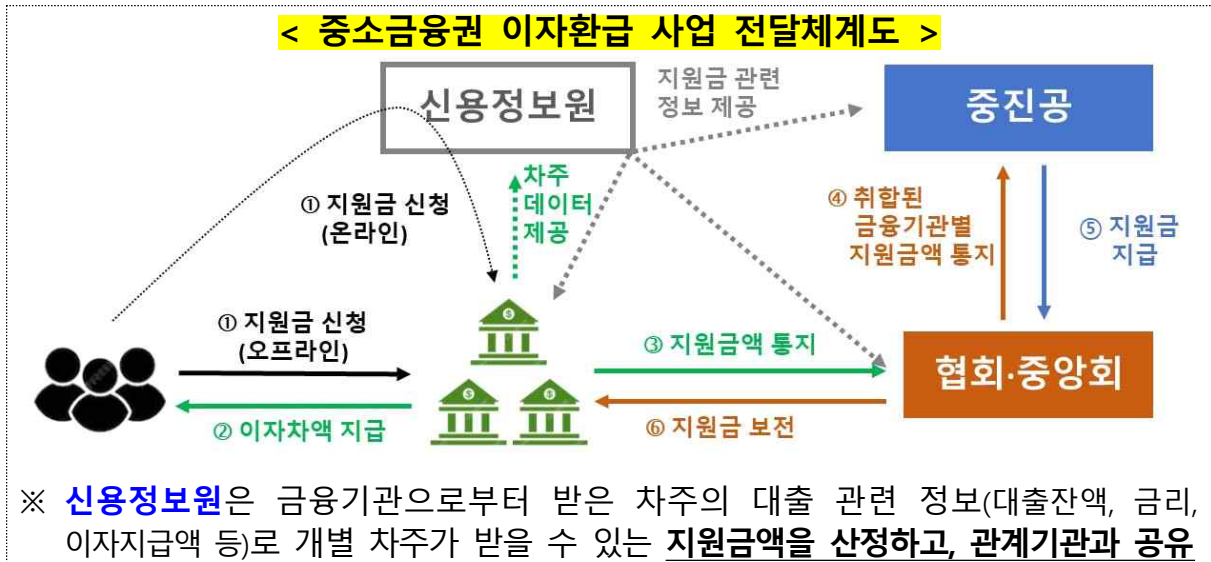
2. 중소기업권 이자환급의 경우 (은행권 이자환급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지?

-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기업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음
  - 중소기업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음
  -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임



3.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기업권 이자환급은 왜 2월중 집행이 안되는지?

- 여러 금융권역의 약 3천6백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